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6] <개정 2021. 10. 20.>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제25조제1항 관련)

구분		측정횟수	측정항목	측정시기
1.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가. 하천 수, 복류 수, 강변 여과 수	1)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총인,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2) 분기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CB),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테인, 디클로로메테인,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3월, 6월, 9월, 12월
	나. 호수	1)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총인, 클로로필-a,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2) 분기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CB),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테인, 디클로로메테인,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3월, 6월, 9월, 12월
	다. 지하 수	반기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라.	1) 분기마다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대장균군(총대장균군,	

	해수	1회 이상	분원성대장균군), 노말헵세인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2) 매년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보론(붕소, boron),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2. 마을 상수도 · 전용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가.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의 표류수	1) 반기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2) 2년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CB)	
	나. 호소수	1) 반기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2) 2년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CB)	
	다. 지하수	2년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플루오린(불소, fluorine)	
	라. 해수	1) 반기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노말헵세인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2) 2년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보론(붕소, boron),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비고

1. 채수(採水) 지점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흘러들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나.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着水井)에서 1회를 취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2. 검사방법

가.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붕소, boron) 및 지하수항목: 「환

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나. 그 밖의 측정항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3. 검사결과

원수의 검사결과는 검사한 자료를 연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히 취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기상상태에서 7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의 수질측정 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